

초고령(만80세 이상) 투자자확인서(장외파생상품용)

■ 초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 안내 확인

- 초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본인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자의 연락처의 제공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.

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제공

[조력자 미방문] 장외파생상품거래 불가

■ [조력자 방문] 조력자 연락처 작성

(필수)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[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 제공용]

(주)하나은행 귀증

귀 행과의 비여신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조력자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수집 · 이용 목적	-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력자 연락처 확보 - 투자상품 가입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위험을 설명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성명 확보
보유 및 이용기간	- 장외파생상품 만기일까지 보유 · 이용 * 위 보유기간에서 장외파생상품 만기일이란 개별거래의 만기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객의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이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.
거부 권리 및 불이익	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위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"초고령투자자 조력자 지정을 위한" 필수적 사항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초고령투자자 조력자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수집 · 이용 항목

- 개인(신용)정보
- 일반개인정보

조력자 성명 및 연락처

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하지 않음 동의함

※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조력자와 고객과의 관계 : _____

조력자 성명 : _____ 서명(인)

조력자 연락처 : _____

■ [조력자 미방문] 장외파생상품거래 불가

- 하나은행은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투자자 고객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, 조력자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고객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체결이 불가능합니다.

■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설명직원 사전확인

- 하나은행 _____ 지점 관리직 직원(영업점장 및 관리자,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) _____ 은(는)
고령투자자 고객 _____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음.
직원명 : _____ 서명(인)

20

년

월

일

고객명 :

서명(인)

